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51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영 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8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 현황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진중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6. 3. 30.

다. 회 부 일: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 외에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산업의 개발과정에서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Ⅲ. 검토의견

□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콘텐츠의 제작·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②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문화콘텐츠관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홍보,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8조의1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8조의13(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반의 관광산업 및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화, 방</u>

현행	개정안
	<u>송영상품 등 문화콘텐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이하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연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홍보,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이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및 지역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문화콘텐츠관광특별 지역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지원 내용·방법 등에 필</u>

현행	개정안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생략)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8조의14(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현행 제48조의13과 같음)

다. 검토사항

최근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영화, 영상물의 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시행, ②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③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보존,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 지정제도의 신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관광진흥법」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

1)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

지사가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관광지 228개소, 관광단지 59개소, 관광특구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²⁾, 현재 지정된 관광지 중 문화콘텐츠 제작·촬영과 관련된 곳으로는 단양 온달관광지, 완도 해신 장보고 관광지, 상주 경천대관광지 등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은 일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필요 시 지원하여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② 문화콘텐츠관광

추여야 한다.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교통·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특별지역 지정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법상 관광지 또는 관광특구 등의 지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는 세부적인 지방관광 활성화 시행계획은 정부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방 소재 문화유산, 영화·드라마 촬영 장소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보다 전문성이 있는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정 현황

○ 관광지 지정 현황

시·도	지정 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5	기장도예촌, 용호씨사이드, 태종대, 해운대, 황령산(금련산청소년수련원)
인 천	2	마니산, 서포리
대 구	2	비슬산, 화원
경 기	14	공릉, 궁평, 내리, 대성, 백운계곡, 산장, 산정호수, 소요산, 수동, 신륵사, 용문산, 임진각, 장흥, 한탄강
강 원	42	간현, 강릉 등명, 고석정, 고씨동굴, 광덕계곡, 구곡폭포, 내설악용대, 대관령 어흘리, 마차탄광문화촌, 망상, 맹방, 무릉계곡, 미탄마하생태, 방동약수터, 삼척해수욕장, 삼포문암, 속초해수욕장, 송지호, 스피디움, 아우라지, 어답산, 연곡해수욕장, 영월 마차탄광문화촌, 영월온천, 오색, 옥계, 유현문화, 인제스피디움, 장호, 주문진 해변, 지경, 직탕, 척산온천, 청평사, 초당, 추암, 태백 구문소,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팔봉산, 호반, 홍천온천, 화암, 화진포, 후곡약수터
경 북	34	경산온천, 경천대, 고래불, 고령부레, 다덕약수, 문경새재, 문경온천, 문수, 문장대온천, 부석사, 상리, 성주호, 안동하회, 영양 선바위, 영주순흥, 예안현, 예천삼강, 예천포리, 오진약수, 울릉도, 울릉군 개척사, 울진 백암온천, 울진 성류굴, 의성탑산온천, 장사해수욕장, 청도 신화랑, 청도온천, 청도용암온천, 청송 주왕산, 치산, 칠곡 가산산성, 풍기온천, 호미곶, 회상나루
경 남	22	가조온천, 거가대교, 거제 장목, 거창 수송대, 금서, 농월정, 당항포, 도남, 마금산온천, 목계, 미송산, 벽계, 부곡온천, 산청 전통한방휴양, 송정, 실안, 오목내, 자란도, 중산, 표충사, 합천보조댐, 합천호
전 북	21	금강호, 금마, 김제온천, 남원, 내장산리조트, 마이산회봉온천, 모악산, 미륵사지, 방화동, 백제가요정읍사, 벽골제, 변산해수욕장, 부안 모항, 사선대, 석정온천(고창웰파크시티), 오수의전, 왕궁보석테마, 웅포, 위도해수욕장, 은파, 진안 윤일암반일암
전 남	28	강진 대구도요지, 나주호, 담양호, 대광해수욕장, 도곡온천, 도립사, 땅끝, 무안 화산연꽃방죽, 백수해안 노을, 불갑사지구, 성기동, 영산호, 영암 마한문화공원, 완도 신지 명사십리, 완도 해신 장보고지구, 우수영, 운주사, 울포해수욕장, 장성호,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정남진 우산도지구, 지리산온천, 진도 녹진, 진도 아리랑마을, 진도 회동,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함평 사포, 화순온천
충 북	22	괴강, 구병산, 금월봉, 능강, 능암온천, 단양 다리안, 레인보우 힐링, 만남의광장, 무극전적국민, 속리산레저, 송호, 수옥정, 온달, 장계, 제천 계산, 제천 교리, 제천 성내, 제천온천, 천동, 충온온천, 충주호체험, 탄금공원
충 남	23	간월도, 곰나루, 공주문화, 공주 마곡온천, 구드래, 금강하구둑, 난지도, 대천해수욕장, 덕산온천, 마곡사, 만리포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삼교호, 서동요역사, 아산온천, 안면도, 예당, 왜목마을, 죽도, 천안종합휴양,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도립온천, 태조산
제 주	13	곽지, 김녕, 돈내코, 미천굴, 봉개휴양림, 용머리, 제주 남원,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상상나라 탐라공화국, 토산, 표선민속유원지, 함덕, 협재
합 계	228개	전체 관광지 면적 합계 : 118,807,457.5m ²

○ 관광단지 지정 현황

자치단체		명 칭	위 치	지정면적 (㎡)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일원	3,662,486.4
인천 (2)	강화군	강화종합리조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281-1번지 일원	652,369.0
	옹진군	선미테마아일랜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187번지 일원	666,417.0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219번지 일원	2,736,218.5
울산 (3)	북구 (2)	강동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4,559.0
		웨일즈코브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산42-1번지 일원	1,506,816.0
	울주군	울산 알프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25-1번지 일원	1,499,978.0
경기 (3)	안성시	안성 죽산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129번지 일원	1,349,679.0
	평택시	평택호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663,013.0
	화성시	화성 국제테마파크	화성특례시 남양읍 신외리, 문호리 일원	2,854,708.0
강원 (17)	고성군 (2)	고성 델파노골프앤 리조트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 일원	900,018.1
		고성 켄싱턴 설악밸리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71-60번지 일원	849,114.0
	속초시 (2)	설악 한화리조트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1,332,578.0
		속초 영랑호	속초시 금호동 600-7번지 일원	1,318,436.0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2,730,587.8
	원주시 (3)	원주 더 네이처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1번지 일원	1,444,086.0
		원주 루첸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239-1번지 일원	2,644,254.0
		원주 오크밸리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판대리 일원	11,350,334.9
	춘천시 (2)	춘천 신영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438번지 일원	1,695,922.7
		춘천·홍천 라비에벨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56-1번지,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일원	4,846,932.9
	평창군 (3)	대관령 알펜시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4,836,966.0
		평창 용평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5,770,310.0
		평창 휘닉스파크	평창군 봉평면 먼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4,233,039.0
	홍천군 (2)	홍천 비발디파크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일원	7,052,479.2
		홍천 샤인데일	홍천군 서면 동막리 650번지 일원	2,421,331.4
	횡성군 (2)	횡성 드림마운틴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261-1 일원	1,796,574.0
		횡성 웰리힐리파크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830,709.0
경북 (7)	경주시(4)	감포해양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	1,804,215.2
		마우나오션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6,420,347.3
		보문	경주시 보문동, 북군동, 손곡동, 신평동, 천군동, 천북면 일원	8,515,243.0
		북경주 웰니스	경주시 안강읍 검단장골길 181-17 일원	809,797.0
	김천시	김천온천	김천시 부항면 부항로 1679-15	1,424,423.0
	안동시	안동문화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55,181.2
	칠곡군	웰빙-스테이 레포츠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산73-3번지 일원	998,192.0

자치단체		명 칭	위 치	지정면적 (㎡)
경남 (3)	거제시	거제 남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울포리 일원	3,693,875.0
	창원시 (2)	구산해양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삼리 일원	2,847,253.0
		진해 웅동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2,101,234.0
전북	남원시	남원 드래곤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131 일원	795,329.4
전남 (7)	광양시	광양 구봉산	광양시 황금동 산107번지 일원	2,072,623.0
	여수시 (4)	경도 해양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155,967.5
		여수 무술목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번지 일원	1,193,190.0
		여수 웰린지파크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333-2번지 일원	510,424.0
		여수 화양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6,434,744.0
	진도군	진도 대명리조트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	559,089.3
해남군	해남 오시아노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73,425.0	
충북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2,622,825.0
충남 (4)	보령시 (2)	보령 대천리조트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25-1번지 일원	964,195.0
		보령 원산도 대명리조트	보령시 원산도리 산219-2번지 일원	966,748.0
	부여군	백제문화	부여군 규암면 함정리, 신리, 호암리, 오수리 일원	3,024,870.2
	천안시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6번지 일원	1,693,518.0
제주 (9)	서귀포시 (6)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00번지 일원	523,766.0
		성산포해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746,939.0
		수망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628-11번지 일원	2,426,071.0
		신화역사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번지 일원	3,985,601.4
		제주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	1,539,339.0
		중문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일원	3,197,879.4
	제주시 (3)	묘산봉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9번지 일원	4,221,984.0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일원	587,726.0
		프로젝트ECO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696,932.0
합 계		59개		163,272,863.8

○ 관광특구 지정 현황

지역	특구명	지정 지역(소재지)	면적 (km ²)	최초 지정 일
서울(8)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0.87	200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0.38	1997.09.29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 신당1동 일원	0.58	2002.0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숭인동 4거리)	0.54	2006.03.30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31	2012.03.15
	강남마이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0.19	2014.12.18
	홍대 문화예술	마포구 홍대 일대(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원)	1.13	2021.12.02
	고터·세빛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및 고속터미널 일대	0.84	2024.12.26
부산(3)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6.23	1994.0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창동·보수동 일부	1.08	2008.05.14
	동구 크루즈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및 초량동 일원	1.48	2026.07.08
대구(1)	동성로	성내1·2·3동, 남산1·2동, 대봉1동, 삼덕동 일원	1.16	2024.07.22
인천(1)	월미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3.00	2001.06.26
대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1994.08.31
경기(5)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0.40	1997.0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0.49	1997.05.30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3.94	2015.08.06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일대	1.83	2016.01.15
	통일동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3.01	2019.4.30
강원(2)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10	1994.08.31
	대관령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428.27	1997.01.18
충북(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9.22	1997.0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43.53	1997.0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2005.12.30
충남(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3.71	1997.0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흥동, 웅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52	1997.01.18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1997.0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1997.01.18
전남(2)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산동면 일부	78.02	1997.0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	6.89	2007.09.28
경북(4)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1994.0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1997.0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1.85	2010.01.18
	포항 영일만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시내 실개천 일대	2.41	2019.8.12
경남(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4.82	1997.0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0	1997.01.18
제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1,809.56	1994.08.31
14개 시·도 37개소				